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21호
2.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외 31명
3. 발의일자 : 2021. 8. 11.
4. 회부일자 : 2021. 8. 18.

II. 제안이유

-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III.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김생환 의원 등 3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21호로 발의되어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실태조사 참여 학생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총론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장소를 가정 또는 학교로 특정하면서 학교에서 실시할 경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2년부터 도입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sup>1)</sup>
- 그러나 그동안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컴퓨터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담당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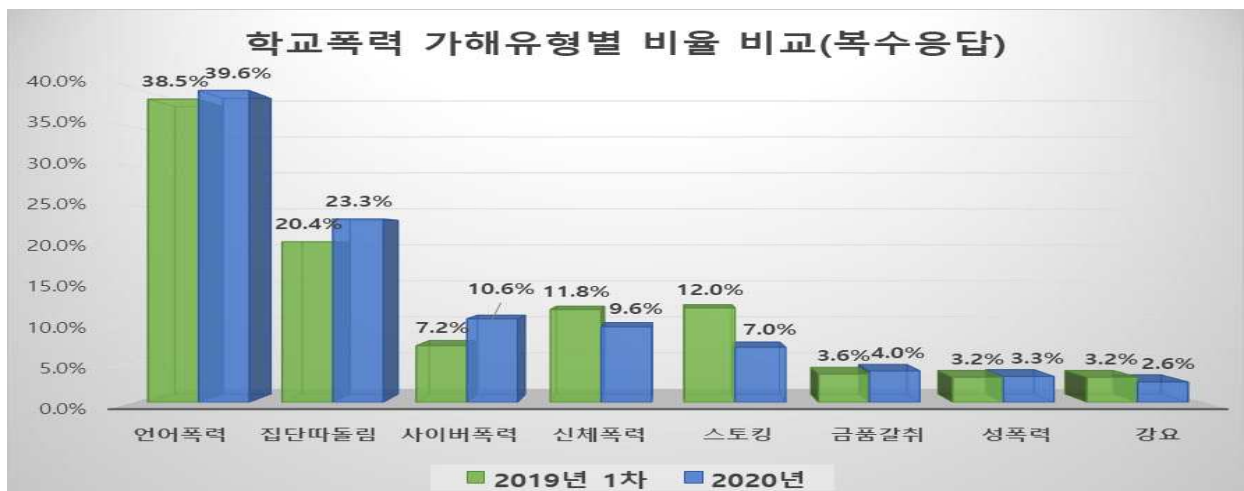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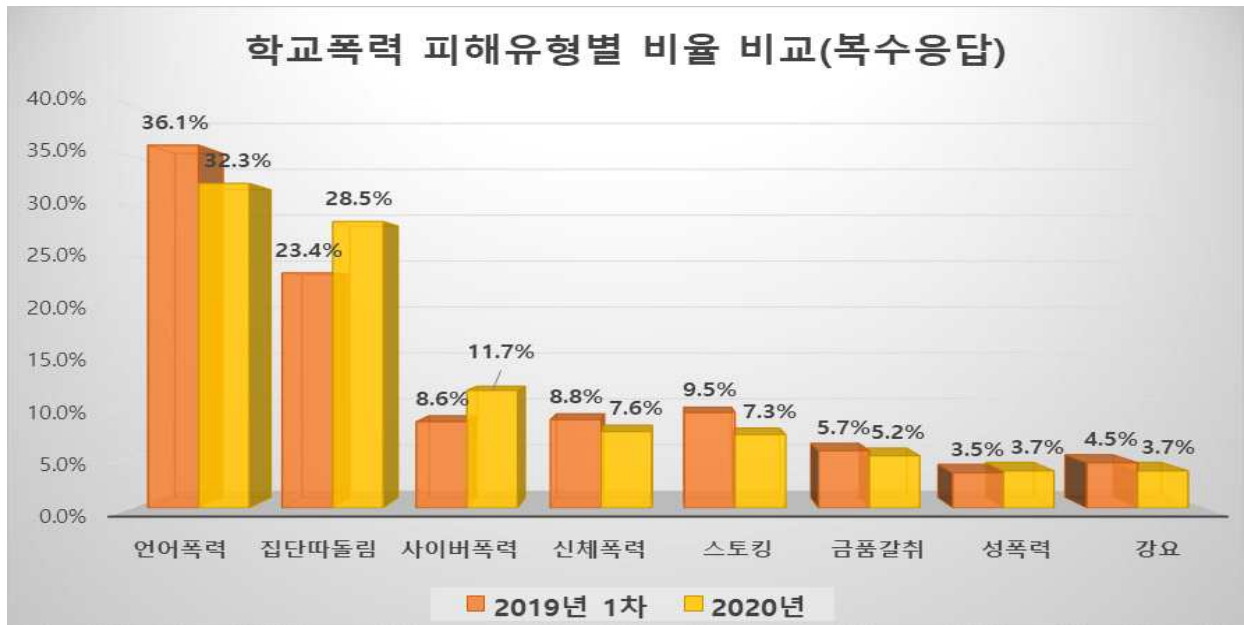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략)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 ⑫ (생략)

고 동일 장소에서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고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sup>2)</sup>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는 시스템의 문제와 개인정보 유

2) 「교사들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식행위 “...서울교육청 토론회” 연합뉴스, 2017.7.10.

출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sup>3)</sup>

- 그러나 금년부터 교육부의 정책전환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 나. 조문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제2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식당, 학원, 이동 중의 차량 등에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가정과 학교에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동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참여 장소는 학생의 선택,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특정 장소에서 실태조사를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태조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면서 참여 장소 특정 규정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 한편 동 조문에는 단서규정으로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

3) 「교육부 오늘부터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모바일 방식 없이 PC로만」 뉴시스, 2020.9.14.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독립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개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인데, 1년에 1~2회 실시하는 실태 조사를 위해 학교에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동 조문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작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시 학생의 개별 참여가 보장되도록 독립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면서, 컴퓨터가 있는 특별실 등을 개방하거나 개방된 공간인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미 개별 공간 마련을 통한 실태조사의 비밀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붙임 1] 참고)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토록 한 것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사항을 동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9호, 2021. 6. 22., 일부개정]

-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1.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학생의 솔직한 응답과 비밀보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개별 참여를 우선으로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조사 기간 중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학생들의 편안하고 솔직한 응답 및 비밀 보장을 위해 학교 여건에 맞는 개별참여 환경 마련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

### 학교 내 개별 조사 참여 환경 제공

- 학생의 개별 참여가 보장되도록 독립 공간 마련
  - ▶ 학생이 자율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있는 특별실 등을 개방
  - ▶ 특별실(컴퓨터실 등)에서의 조사 참여 시 개인 또는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별로 이용하여 다른 학생의 응답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특히 같은 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조사에 참여하는 단체조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 개방된 공간인 경우 옆 자리와 임시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독립 공간 마련
- 조사 시작 전 응답 비밀 보장을 위한 조사화면 투명도 조절 기능 안내
  - ▶ 조사화면 우측 상단 투명도 조절 기능 탑재(기본 설정 : 투명도 70%)
- 조사 응답 시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간 일치
  - ▶ 여러 학생이 조사에 응답하는 경우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간(전체 약 10분 소요)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학생 간 응답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함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조사 문항이 다름(최소 5개 ~ 최대 22개 문항))
  - ▶ 설문이 일찍 종료되었어도 조사 종료시간까지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도
- 서술형 문항 응답을 고려한 충분한 조사 참여 시간 제공
  - ▶ 학교급·학년별 및 학생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시간 제공
- 학부모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조사 참여 과정 모니터링 권장
  - ▶ 학부모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학생들의 조사 참여 안내 및 모니터링 역할 부여
  - ▶ 일정 기간 동안 교사 대신 학생들의 실태조사 참여 및 관리 역할 수행